

【 12 】 양주군 도시개발조례안

제출년월일 2003. 6.
제출자 양주군수

1. 제정이유

-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 따른 도시개발법 제정과 관련하여 등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면적이 10만제곱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·면을 공청회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,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할(안 제4조)
- 나. 공청회 개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군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구역 특성에 따라 사업 구역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도록 할(안 제8조)
- 라.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할(안 제9조)
- 마.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정부의 보조금,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등으로 할(안 제10조)
- 바. 특별회계의 운도를 규정함(안 제11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“령”이라 한다.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도시개발구역”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2. “도시개발사업”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·정보통신·생태·문화·보건 및 복기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신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, 집행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.

제4조(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) 법 제7조 제1항과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·면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,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) ①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주민의견 반영 등)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결론의견은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(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) 법 제7조 및 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고 소요비(총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예상 소요비)를 포함하여 할 수 있다.

제8조(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)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별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환경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.

제9조(특별회계의 설치) 군수는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도 자체 특별회계 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0조(특별회계의 재원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출판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2. 국·도비 보조금
 3.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
 4.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·징수된 과태료
 5. 백발이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체 회수되는 백발부당금의 50퍼센트
 6. 군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
 7.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·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 8. 광역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·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
- ② 군수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대회계연도 이전 40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,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특별회계의 운영구도
 2. 광역 회계연도 융자처분
 3. 특별회계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항
 4. ③ 특별회계 관리비 유흐한 사항

제11조(특별회계의 운용)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
2.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용자
3.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. 다만, 국토의 박획 및 이종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은 예외한다.
 - 가. 도로·철도·주차장 등 교통시설
 - 나. 광장·공원·녹지 등 도시공간시설
 - 다. 유통업무시설, 수도·전기·가스 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, 공동구 등 유통·공급시설
 - 라. 학교·운동장·공공청사·문화시설 등 공공·문화시설
 - 마. 하천·우수지·방화설비 등 방재시설
 - 바. 하수도·화장장·공동묘지·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
4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5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6. 군수자이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

제12조(용자의 조건 및 상환) ① 용자금의 이율은 용자금 지원 당시의 양주군 금고로 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 금리로 한다.

② 용자금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 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,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③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자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은 「방재정법」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른 조례의 폐지) 양주군 「남부도로설비사업」을 대체하는 이를 폐지한다.

⑤(증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
는 종전의 양주군 가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⑥(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)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례지법률 부칙
제6조와 그경계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토지 및 미정
수 용지금지 및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
세발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도서관 발록별회계에 구속된다.